

# 人的 資本과 所得의 世代間 移動性

高 弼 秀\*

## 目 次

I. 序 論	IV. 出産과 結婚
II. 勤勞所得과 人的資本	V. 實證分析의 結果
II. 1. 資本市場이 完全한 경우	V. 1. 父子間의 勤勞所得 또는 所得의 關係
II. 2. 資本市場이 不完全한 경우	V. 2. 父子間의 富의 關係
III. 財産과 消費	VI. 要約 및 結論

## I. 序 論

파레토(Pareto)가 1897년에 각국의 소득분배는 log선형으로 일정한 분포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후 개개인간 또는 가족간의 근로소득, 소득, 재산의 분포와 불공평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많이 있었지만,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 아랫 세대간의 소득 또는 부의 상관관계로 부터 유래되는 한 가정의 세대간의 소득의 불공평성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아다도 슈페터(Schumpeter 1951)가 이론적은 물론 실증적으로 세대간의 이동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주요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는 매우 짧다고 하겠다.

반면 사회학자들과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부모의 직업, 교육 등과 자식의 직업, 교육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예를 들면, Blau & Duncan(1967)은 그들의 저서인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에서 자식의 성취도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거슬러 올라가서 1889년 John Dewey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Upon the average, children of parents who are exceptional, or who deviate from the mean, will themselves deviate from the mean only one third of their parent's deviation ... It is not likely that children of the poor would be better off, and children of the wealthier poorer in anything like the ratio of 2/3."

\* 경상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비록 가정간의 불평등 즉 횡단분석적인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동일 가정의 세대사이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와 완전히 분리되었다하더라도, 이 두 개의 불평등은 분석적으로 볼 때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소득사이에서의 관계가 평균으로 부터의 확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반면 평균으로의 수렴은 불평등이 안정적으로 축소됨을 뜻한다. 이 관계는 부모의 소득과 자식의 소득에 관한 간단한 Markov모형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1) I_{t+1} = a + bI_t + \epsilon_{t+1}$$

여기서  $I_t$ 는 부모의 소득,  $I_{t+1}$ 는 자식의 소득,  $a$ ,  $b$ 는 상수항이고,  $\epsilon_{t+1}$ 은 부모의 소득과는 독립적이고 자식의 소득의 영향을 미치는 오차 항이다.

이 식으로 부터 우리는 소득의 불평등은  $b$ 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며,  $b$ 가 절대치에서 1보다 작다면 소득의 불평등은 일정수준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확실히  $b$ 의 크기는 부유한 부모를 가진 자식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덜 부유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가난한 부모를 가진 자식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개선되는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이와 같은 예가 암시하는 것은 아무리 경직된 계급사회에서도  $b$ 가 1보다 작다면 엘리트 가정이나 하위층의 가정은 경제적인 지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성취도에 비해서 자식의 성취도가 평균으로 부터의 확산 또는 평균으로의 수렴의 정도는 한 사회내에서 기회의 평등성이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잣대가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대간 이동성 또는 한 가정의 흥망성쇠라고 일컬을 수 있는 불평등 기회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그리고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의 재산상태나 직업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 자식에 대한 부모애, 결혼시장에서의 유사층 끼리의 결혼(계급결혼), 자식에 대한 수요(출산율), 자식들의 능력에 따른 부모의 다른 대우 등의 요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모형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에서는 자식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전개된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이 근로소득사이의 관계가 대부분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의 부의 이전,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소비의 상호작용이 Ⅲ에서 논의된다. Ⅳ에서는 소비와 부의 세대간 이동성에 대한 자식의 수의 영향과 결혼시장에서의 계급결혼의 이동성을 고려한다. Ⅴ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의 미비로 외국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도출한 함의에 대한 실증분석을 대신한다. 요약 및 결론이 Ⅵ에 뒤따른다.

## II. 勤勞所得과 人的資本

### II. 1. 資本市場이 完全한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유아교육에 관심을 쏟거나, 다른 유리한 문화적 그리고 유전적 특성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은 DNA속에서, 그리고 문화적 요인은 가족문화를 통하여 이전이 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인 공헌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본 고에서는 이 양자를 하나로 보고 개인적 부존 혹은 단순히 부존(endowments)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개인적 부존도 식(1)과 같이 Markov방정식을 통하여 이전이 된다고 가정한다.

$$(2) E_t^i = a_1 + hE_{t-1}^i + v_t^i$$

여기서  $E_t^i$ 는  $t$ 번째 세대,  $i$ 번째 가정의 부존(또는 부존의 vector)이고,  $h$ 는 이 부존의 유전가능성의 정도,  $v_t^i$ 는 이전과정에서의 비체계적인 요인 또는 운을 나타낸다. 그리고 부모는 투자를 통하여 자식의 부존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가정한다. 또한  $a_1$ 는 동일한 사회내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공통인 사회적 부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사회적 부존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h$ 가 1보다 작다면 ( $h < 1$ ), 평균부존은 궁극적으로  $1/(1-h)$ 에 사회적 부존  $a$ 를 곱한 것( $1/(1-h) \times a$ )과 같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부존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a$ 도 증가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근로소득에 관한 정확한 정보로부터 부존의 유전가능성의 정도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h$ 의 부호나 크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개인적 부존이 부분적으로만 유전된다는 가정, 즉  $h$ 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는 가정이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정은 궁극적으로 부존( $E$ )은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즉 부존이 많은 부모의 자식은 평균이상의 부존을 가지지만 부모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균에 가깝게 되는 경향이 있고, 부존이 적은 부모를 둔 자식은 평균이하의 부존을 가지지만, 그 부모보다는 평균적으로 큰 부존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는 그들의 부존의 일부를 자식에게 이전시킬 뿐만 아니라, 자식의 기술, 건강, 학습, 동기, 학위등 많은 다른 특성들에 지출을 함으로써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준다. 이 지출은 자식의 능력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 선호, 출산 그리고 교육과 다른 인적자본에 대한 공공지출에 의하여 결정된다. 근로소득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유일한 소득의 원천이기 때문에 부모는 주로 자식의 잠재적 근로소득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식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영향을 간단한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생애가 유년기와 성년기로 나누어진 2기 모형과 성년기의 소득은 부분적으로는 자격인정의 측정수단으로 쓰이는 인적자본( $H$ )과 운( $I$ )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자.

$$(3) Y_t = r(T_t, f_t)H_t + k_t$$

한 단위의 인적자본의 근로소득 즉 인적자본의 가격( $r$ )은 요소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기술적인 지식( $T$ )과는 정의 관계를, 한 경제에서의 인적자본과 비인적자본과의 비율( $f$ )과는 부의 관계를 가진다. 사실 인적자본의 가치는 모든 가정에 공통이기 때문에  $r$ 의 정확한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r=1$ 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인적자본은 기술, 능력, 외모, 평판, 적절한 자격증등 여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가정의 인적자본은 동질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보다 분석을 단순화한다. 유년기의 투자가 성년기의 발전에 결정적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예: Bloom, 1976)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훈련(OJT)을 포함한 축적된 인적자본의 양은 또한 유년기에 축적된 자본의 양과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성년기의 인적자본과 이 자본으로부터의 기대소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존( $E$ )과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부모의 지출( $x$ )과 공공지출( $s$ )에 의하여 결정된다.

$$(4) H_t = \Psi(x_{t-1}, s_{t-1}, E_t) \quad \Psi_j > 0, \quad j=x, s, E$$

능력, 조기교육, 그리고 한 가정의 문화 및 유전적 하부구조는 인적자본의 생산에 있어서 가정의 지출과 공공지출의 한계효과를 상승시킨다. 즉

$$(5) \partial^2 H_t / \partial x_{t-1} \partial E_t = \Psi_{jE} > 0, \quad j=x, s$$

그리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지출의 한계수익률( $r_m$ )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정의된다. 즉, 2기 모형에서 1기에서의 투자는 다음기말에는 (원금+투자수익율)로 표시된다.

$$(6) \partial Y_t / \partial x_{t-1} = \partial H_t / \partial x_{t-1} = \Psi_x = 1 + r_m(x_{t-1}, s_{t-1}, E_t)$$

그리고  $\partial r_m / \partial E > 0$  (식 (5)에 의하여)

비록 각자의 인적자본은 매우 가까운 대체재일지 모르지만, 각자는 분리된 인적자본 '시장'을 형성한다. 그 개인에게의 수익율은 그에게 투자된 양과 인적자본의 총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계수익율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궁극적으로 감소한다. 주요한 이유로는 인적자본 투자기간중 상실되는 소득(foregone earnings)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증가한다는 것과 이 역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잔여 근로기간이 짧아 질수록 투자로 인한 투자수익도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Becker, 1975). 반면에 비인적자본 또는 실물자산은 비교적 효율적인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물자산의 수익은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물자산의 수익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수익율과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식이 타고난 운수( $v_t$ )의 많은 부분은 부모에게 노출된다. 따라서 사회적 부존  $a_t$ 와 공공지출  $s_{t-1}$ 이 알려져 있는 한 투자수익율은 완전히 부모에게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인적자본과 실물자산사이에 자식에게 부모의 총중여

또는 유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부모는 자식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달을 실물자산 이자율로 차입하고, 자식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이 부채를 자식이 갚을 의무가 있다고 가정한다.

부모는 자신들의 소비나 여가의 감소없이 자식의 후생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부모는 자식의 순소득(= 근로소득-부채)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차입할 것이다. 이것은 순소득의 극대화는 자식에의 인적자본투자가 한계수익율과 이자율이 같아질 때 까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7) r_m = r_t \text{ 또는 } \hat{x}_{t-1} = g(E_t, S_{t-1}, r_t) \quad \text{단, } \hat{x} \text{은 최적수준의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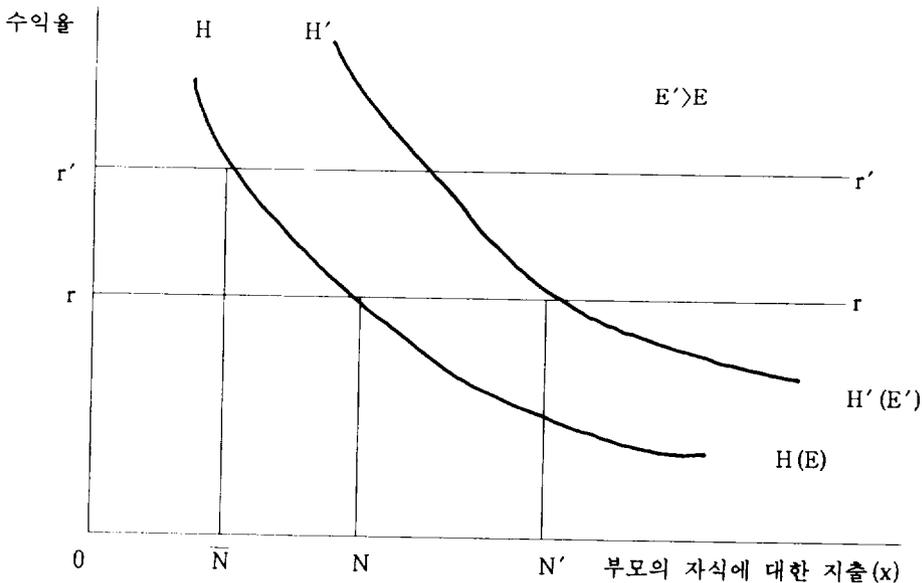
그리고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8) g_E > 0 \text{ (식 (6)에 의해),}$$

$$g_r < 0, g_s < 0 \text{ (만일 공공지출과 개인지출이 대체재라면).}$$

부모는 또한 차입한 자금은 자식이 채무의무를 지기 때문에 자신의 자원과 자식에 대한 부모애와 자식에 대한 투자를 분리시킬 수 있다.

최적수준의 투자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평의 자금공급곡선  $rr$ 과 우하향의 기울기를 가지는 수요곡선 ( $HH$  또는  $H'H'$ ) 과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다 많은 부존을 가진 사람이 보다 많은 인적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부존이  $E$ 인 사람은  $ON$  단위를 축적하지만,  $E$ 보다 큰  $E'$ 를 가진 사람은  $ON'$ 을 축적한다. 이에 따라 부존이 많은 사람은 보다 높은 예상근로소득을 얻게 된다.



<그림 1> 투자량과 수익율

이것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부존의 총효과와 부존의 불평등 또는 비대칭성에 대한 근로소득의 불공평 또는 비대칭성은 부존과 투자량의 정의 관계에 의하여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다른 것은 이자율의 상승( $rr \rightarrow r'r'$ )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을 하락시킨다. (ON과  $\overline{ON}$ 을 비교해보라.) 공공지출의 증가효과는 애매하다. 만약 공공지출이 개인지출과 완전대체관계에 있다면 인적자본의 생산은 두 개의 지출의 합( $x+s$ )와 부존(E)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공공지출의 증가는 개인지출을 그 만큼 감소시키고, 인적자본의 축적도 불변으로 남게된다. 그렇지만 공공지출이 매우 크게 증가한다면 개인 지출(사적 지출)은 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듯 자본시장이 완전한 경우 가난한 부모도 그의 자식의 최적수준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의 인적자본과 근로소득은 부모의 재산이나 근로소득과는 무관하게 된다. 그러나 자식의 소득(income)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재산 또는 부채의 상속은 부모의 근로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즉 부유한 부모는 인적자본의 축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자체 조달함은 물론 상당규모의 재산을 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과 자식의 인적자본은 부모의 근로소득과 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개인적 부존의 유전을 통하여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유전가능성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부모의 인적자본과 근로소득과 자식의 그것들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이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식(7)에 주어진 개인 지출의 최적수준을 식(3)에 대입시키면 식(9)와 같은 관계를 얻게 된다.

$$(9) Y_t = \Psi(g(E_t, s_{t-1}, r_t), s_{t-1}, E_t) + k \\ = \phi(E_t, s_{t-1}, r_t) + k$$

$$\text{그리고 } \phi_E = \Psi_g g_E + \Psi_E = \underbrace{(\partial Y / \partial x)}_{(+)} \underbrace{(\partial x / \partial E)}_{(+)} + \underbrace{\partial Y / \partial E}_{(+)} > 0$$

식(9)는 E가 Y, l, g 그리고 r과 관련되어 있고, E<sub>t</sub>는 식(2)로부터 E<sub>t-1</sub>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Y<sub>t</sub>는 Y<sub>t-1</sub>, k, v<sub>t</sub>, k<sub>t-1</sub>과 다른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10) Y_t = F(Y_{t-1}, k_{t-1}, v_t, h, s_{t-1}, s_{t-2}, r_t, r_{t-1}, a_t) + k$$

또한 부모의 근로소득과 자식의 그것은 부존(E)의 유전가능성(h)이 높을수록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위의 관계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존의 총효과( $\phi_E$ )에도 의존한다. 따라서 이의 관계를 선형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1) Y_t = c_t + a_t \phi_E + h Y_{t-1} + k$$

즉, 궁극적으로는 자식의 근로소득은 부모의 근로소득과 유전가능성에 의존하는 식을 얻게 된다.

이 식은 유전가능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근로소득과 자식의 근로소득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어 후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내포하고 있다.

## II. 2. 資本市場이 不完全한 경우

자식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자유로운 접근은 근로소득의 이전을 자식에 대한 부모애와 부모의 자원으로 부터 분리시킴을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인적자본은 자금의 대여자에게는 좋은 담보물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만약 자식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거나, 낮은 소득이지만 높은 심리적 소득을 얻는 직종에 진입함으로써 자식을 위해 계약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의욕과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부터 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인적자본으로 부터 실현되는 근로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에 의하여 계약된 부채를 자식에게서 회수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것은 자식의 후생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극소수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많은 빚을 남겨놓고 자신들의 소비만 증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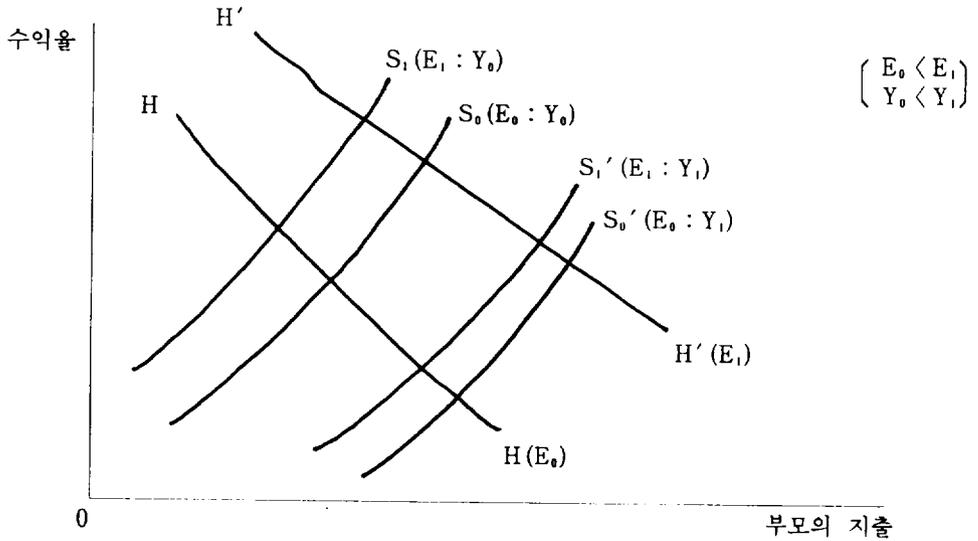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재산을 팔거나, 부모자신의 소비 또는 자식의 소비를 줄이거나, 자식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에서의 효율적인 투자량(ON)을 얻기위하여 부분적으로 자신의 소비를 감축시켜 투자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재산이 없는 부모를 고려해 보자. 부모 자신의 소비의 축소는 자식에의 투자로 부터 얻는 한계효용에 비해 자신의 소비의 한계효용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효용극대화를 위하여 자식에 대한 지출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식에 투자한 양과 부모의 소비는 자식에게 남겨질 수 있는 부채한도에 의하여 축소되게 된다. 반면에 부유한 부모는 높은 수준의 소비와 자식에게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지출은 식(7)에서와 같이 자식의 부존과 공공지출 뿐만 아니라, 부모의 근로소득( $Y_{t-1}$ ), 자식에 대한 부모애( $w$ ), 그리고 자식과 후손들의 불확실성( $\epsilon_{t-1}$ )에 의존하게 된다.

$$(12) \hat{x}_{t-1} = g^*(E_t, s_{t-1}, Y_{t-1}, \epsilon_{t-1}, w), \quad g^*_Y > 0.$$

등록금 보조와 같이 공공지출이 개인지출의 수익율에 영향을 준다면 공공지출과 개인지출은 완전대체관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양자가 완전대체재라면,  $g^*$ 는 단순히  $s_{t-1}$ 과  $Y_{t-1}$ 의 합계에 의존할 것이다. 그것은 공공지출의 증가가 같은 액수의 부모소득의 증가와 동등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부존의 증가는 자식의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자식의 부존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자식이 부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자식에 대한

지출은 억제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자식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은 부모의 한계효용을 더욱 더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자본제약이 있을 때의 투자

〈그림 2〉에서의 지출에 대한 수요곡선은 〈그림 1〉의 그것과 비슷하다. 즉 부존이 많은 자식의 수요곡선은 바깥 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조달비용으로 나타나는 공급곡선은 더 이상 모든 가정에 동일하지 않다. 자식에 대한 지출의 증가는 부모의 소비를 감소시키는데, 이것은 부모의 주관적인 할인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 할인율은 높은 근로소득을 가진 부모 또는 부존이 적은 자식에게는 낮다. 각 가정에서의 자식에 대한 지출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부모의 근로소득의 증가는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예:  $S_1$ 과  $S_1'$ 을 비교하라.) 자식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킨다. 교차점의 분포는 투자의 양과 수익율의 분포를 결정하고, 이는 Becker (1975) 모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소득분배에서의 불평등과 비대칭성(skewness)을 보여준다.

식 (12)를 근로소득함수 (3)과 (4)에 대입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는다.

$$(13) Y_t = \Psi(g^*(E_t, Y_{t-1}, k_{t-1}), s_{t-1}, E_t) + l$$

여기서  $k_{t-1}$ 은  $w, s_{t-1}, \epsilon_{t-1}$ 을 나타내고 있다.

자식의 근로소득은 이 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모의 근로소득과 직결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부존의 유전가능성을 통하여 부모의 근로소득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부모의 근로소득의 간접효과는 부존의 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식 (13)에  $E_t$ 대신  $E_{t-1}$ 을

대체시킴으로써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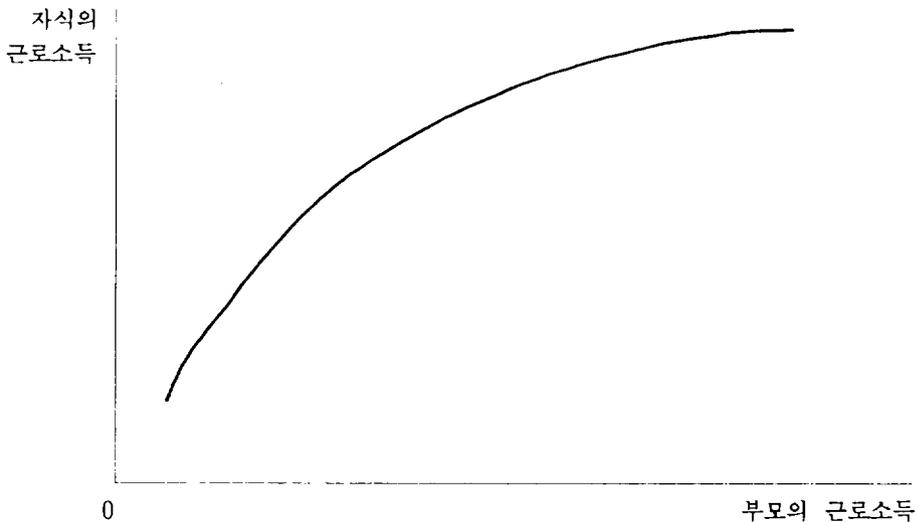
$$(14) Y_t = F(Y_{t-1}, Y_{t-2}, h_{t-1}, v_t, h, a_t, k_{t-1}, k_{t-2}) + l_t$$

따라서 자식의근로소득에 대한 부모의 근로소득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은

$$(15) \partial Y_t / \partial Y_{t-1} = \phi * Y_{t-1} + h\phi * E_t / \phi * E_{t-1} > 0$$

과 같이 표현된다.

식 (15)에서의 부모의 근로소득과 자식의 그것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선형함수라기 보다는 오목함수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부모의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식에 대한 투자자금의 자체조달을 위한 장애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식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여 투자의 수익율이 실물재산의 수익율 까지 하락할 때, 부모 소득의 상승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증가시키고 자식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량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부모와 자식간의 접촉과 자식의 인적자본으로 부터 얻는 직접효용이 부모에게는 더욱 중요할런지도 모른다.



<그림 3> 부모와 자식의 근로소득의 관계

부유한 가정은 중하위층 가정보다 자식에 대한 투자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다. 부유한 가정은 평균치의 부존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가난한 가정의 경우보다 부의 극대화를 이루는 투자량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증적인 관찰들은 부유한 가정은 가난한 가정보다 최적수준에 가깝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투자에 대한 부의 효과가 부존효과를 압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부존이 평균으로의

회귀속도가 빠르다면 부의 효과는 더욱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산으로 부터의 수익이 근로소득과 부존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면, 부의 극대화를 이루는 최적투자량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의 이용가능한 많은 자원이 가지는 함의는 부유한 가정의 부존과 평균수익율은 높은지 몰라도 인적자본 투자의 균형한계수익율은 자본제약이 있는 중하위층 가정의 한계수익율보다 낮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부모의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균형한계수익율은 낮아져 결국 실물자산의 한계수익율과 같아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익율을 보일 것이다. 가난한 가정의 자식은 두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적은 부존을 물려 받았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자본제약이 그가 물려받은 부존의 시장가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부유한 가정의 부존과 투자의 평균생산성이 설령 높다고 하더라도, 부유한 가정의 한계수익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낮다면, 가난한 가정의 자식에게의 인적자본의 재분배는 평균한계수익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낳게한다. 즉, 자본제약이 있는 사람에게로의 투자의 재분배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통 경제학에서 거론되는 공평성과 효율성의 상충은 이 경우에는 사라지게 된다.

인적자본에 대한 공공지출과 개인지출이 완전 대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제약이 있는 가정의 자식의 인적자본에 대규모의 공공지출이 이루어지면 그에게는 총투자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 이유는 조세가 다른 가정, 즉 부유한 가정에 부과된다면 공공지출의 증가는 가난한 가정의 총자원을 증가시키는 결과와 같기 때문이다. 자본제약이 있는 가정에서의 자원의 증가는 한계투자상황에 따라 부모의 소비와 자식의 투자로 배분된다. 만일 공공지출과 개인지출이 완전 대체재라면, 정부지출의 일부분(1-한계투자성향)은 부모의 보상적 반응에 의하여 상쇄된다.

Ⅱ. 1. 에서 보았듯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가정에서의 총투자자는 이미 최적투자량만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지출과 개인지출이 완전 대체재일 때 공공지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부모는 공공지출의 증가분만큼 개인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출은 완전 대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만약 공공지출이 개인지출의 수익율을 상승시킨다면 증가된 공공지출은 한 가정의 지출을 또한 증가시킬 것이다. 이 경우는 두 지출간의 대체효과가 재분배효과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제약이 있는 부모는 만일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 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생애저축에서 자식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많은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신들이 모아 놓은 재산들을 매각하는 대신 자식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자식에 대한 투자의 수익율이 재산의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재산의 축적보다는 자식에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이 부모들은 재산보다는 자식에 의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사회에서도 중하위층의 부모와 자식은 사회적으로 불완전하게 이행되고, 또 설령 부모 자신은 자식에게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종류의 암묵적인 계약을 맺는다. “부모는 자식에게 투자를 하고, 자식은 그 대가로 부모가 늙었을 때 부양한다.” 만일 자식에 대한 지출이 충분히 부모를 부양하고도 남을 만큼 높은 수익을 올린다면, 부모와 자식 양자 모두 이와 같은 계약에 의해 더욱 좋아질 것이다.

### Ⅲ. 財產과 消費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자식에 대한 투자의 한계수익율이 재산의 한계수익율까지 하락할 때까지는 자식에게 재산의 증여나 상속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두 수익율이 같아진 이후 부모는 자식에게 인적자본의 형태보다 실물자산의 형태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려 할 것이다. 이것으로 부터 유추할 수 있는 함의는 자식에게 남겨지는 대부분의 유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부유한 가정의 경우에 한하게 되며, 자식의 인적자본에 대한 실물자산의 비율은 부모의 부가 상승함에 따라 커진다는 것이다. 부유한 가정의 소득 중 실물자산과 비인적자본으로 부터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난한 가정의 경우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의 추론의 정당성은 쉽게 입증된다고 하겠다.

소비 또는 저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소득중 저축되는 부분은 거의 일정하거나, 항상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참고로 Mayer (1972)의 review article을 보라). 그러나 이 연구들은 저축에서 중요한 것을 제외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부존의 세대간 증감으로 부터 오는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저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하위층 가정에서는 주로 그들의 자식의 인적자본에 투자를 한다. 부존 또한 저소득층인 경우 세대가 바뀔에 따라 증가하지만, 고소득층인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중하위층 가정에서의 세대간 자본이득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 가정에서의 저축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저축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도입할 경우 저축율은 (항상)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실물자산형태로의 유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부유한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결론은 Kaldor (1956), Passinetti (1962), Atkinson (1983) 등과 같이 소득계층에 따라서 자식에 대한 부모애나 저축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다. 여기서의 분석은 그 반대로 모든 가정은 저축하고 재산을 남기고 싶은 고유한 경향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난한 가정에서는 저축 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자식의 인적자본형태로 저축을 하기 때문에 소득계층간에 저축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 개인의 재산은 부모로부터의 증여와 자신의 축적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부모는 자식의 예상소득과 생애저축을 제약조건으로 하여 부모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가정에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가정하자.

부모는 자신의 소비와 자식의 효용으로 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단순화하자. 이러한 관계는 자식이 잘 되었을 때 본인은 물론 부모도 아울러서 상당한 정도의 만족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는데서 기인한다. 즉 부모의 효용함수는 가법적으로 분리가능한 형태를 취한다고 하자. 그리고 부모는 오직 한명의 자식만 갖는다고 가정하자.

$$(16) U_t = U(Z_t) + \delta U_{t-1}$$

여기서  $Z_t$ 는 부모의 소비,  $\delta$ 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모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만일 식(16)과 같은 효용함수가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다면, 부모의 효용은 모든 후손들의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의 할인된 합과 같아진다.

$$(17) U_t = \sum_{i=0}^{\infty} \delta^i U(Z_{t+i})$$

즉 부모의 효용은 직접적으로는 자식의 효용에 의존하지만, 자식도 그의 자식에 대해 부모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모든 후손의 효용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는 식(17)에 나타난 그들의 왕조적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한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부모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수준의 유산보다 많이 받으려는 자식의 교섭을 배제시킨다.

만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지출자금을 자식의 채무로 조달한다면, 자금의 한계비용은 실물재산의 수익율과 동일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존이 자식에게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다면 부모애와는 관계없이 자식의 근로소득은 평균으로 수렴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는 자동적으로 평균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높은 근로소득을 올릴지 아닌지를 예상할 수 있고, 예상근로소득의 증감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채와 재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평균으로 회귀할지라도, 만일 부모가 자식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접근이 자유롭다면, 부모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소비와 총자원의 시초의 격차는 아랫세대에게 완전히 이전된다. 확실하게 현세대의 자원은 먼 후대의 자원과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와 이용가능한 총자원에 대한 과거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몇개의 요인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식에게 부채를

이전시키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부모 재산의 출산율에 대한 효과 그리고 불완전한 유사계급끼리의 결혼(계급결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자식이 부모에 의해 창출된 부채의 의무를 진다면 소비와 근로소득은 완전히 분리 될 수 있다. 그러나 II.2.에서 보았듯이 부채가 자식에게 떠넘겨지지 못한다면, 재산이 없는 부모는 자식의 부존과 근로소득의 상하이동을 상쇄시킬 수가 없게 된다. 부모는 자본계약이 단지 몇세대동안만 구속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극대화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효용극대화의 결과는 한 가정의 매 세대마다 내생적으로 결정된 주관적 할인율과 한계수익율에 의하여 요약된다. 주관적 할인율은 자본계약이 있고, 자식에게 채무의 의무를 지을 수 없을 때마다 재산 수익율을 상회한다. 반면 증여를 증감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가진 부모의 할인율은 재산의 수익율과 같아질 것이다.

II.2.에서 보았듯이, 자본계약이 있는 부모의 균형 한계수익율도 근로소득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세대간의 소비의 상대적 그리고 절대적 성장은 부모의 근로소득이 상승할수록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한계수익율이 재산의 수익율과 같은 부유한 가정의 경우에는 세대간 상대적 또는 절대적 성장은 일정할 것이다. 따라서 자식의 소비는 가난한 가정의 경우가 평균으로 상회회귀하는 속도가 부유한 가정의 하향속도보다 빠르다. 동시에 근로소득은 가난한 가정이 부유한 가정보다 느리게 상승하게 된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식에게 증여된 자산은 자식의 소득에서 균형으로의 회귀를 상쇄할 완충역을 한다.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는 근로소득의 하향추세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증여를 증가시킬으로써 장기간 여러 세대에 걸쳐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 IV. 出産과 結婚

결혼의 평준화와 출산에 대한 부의 정의 효과는 부유한 가정들간에 소비와 총자원의 차이가 후대에 까지 무한정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산과 결혼의 소비와 증여에 대한 합의는 Becker & Tomes(1979)에 의해 논의된적이 있다.

우선 식(16)에 나타났던 한명의 자식에 대한 가정을 철회하자. 그러면 부모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18) U_p = U(Z_p) + a(n)nU_c \quad \text{그리고} \quad \partial a / \partial n = a' < 0.$$

여기서  $U_c$ 는 아이의 효용,  $a(n)$ 은 자식에 대한 부모애로 자식의 수,  $n$ 이 증가함에 따라 매 자식에 대한 부모애는 감소한다. 일반적인 분석의 틀을 따를 때, 최적 자녀 수는 추가적인 자식으로 부터 한계효용과 자식을 양육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한계비용은 자식에게의 증여나 선물을 포함한 순지출과 같으며, 이 비용은 주어진 환경과 부모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Ⅲ에서 우리는 부유한 가정의 경우 근로소득의 평균으로의 하향이동을 충분한 규모의 증여로 상쇄되기 때문에 소비와 총자원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함의는 자식의 수요가 변할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부유한 가정의 경우 그들의 많은 자원의 일부를 추가적인 자식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 자식당 남겨질 재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러한 부의 증가에 대한 출산율의 정의 효과는 매 자식당 소비와 부를 어쩌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시킬지도 모른다.

재산이 없고, 자식에게 부채를 남기는 것이 허용이 안된 중하위층의 가정에서는 매 자식당 근로소득, 자식의 수 그리고 부모의 소비간에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매 자식에게 투자된 인적자본과 이로 인한 근로소득은 자식의 수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예 : Blake, 1981). 이들 가정에서는 출산과 부모의 근로소득이 부의 관계가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평균으로의 회귀속도는 늦어질 것이다.

자식들간의 차이로 인한 부모의 대응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재능이 많은 자식 혹은 부존이 많은 자식에게 인적자본에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투자하고, 다른 자식에게는 보다 많은 증여 등의 실물재산의 형태로 그 차이를 보상하려 할 것이다. 주로 인적자본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의 경우에는 부존이 많은 자식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하는 효율성과 부존이 적은 자식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할 공정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Becker & Tomes, 1976, Tomes, 1981).

결혼의 평준화 - 불완전한 유사계층끼리의 결혼 - 역시 근로소득, 소비 그리고 재산의 평균으로의 회귀속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부모도 간혹 자식의 결혼대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의 효과는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그리 명백하지 않다. 예를 들면, 부유한 부모는 부존의 평준화 경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선물이나 증여의 수단을 이용하듯이, 불완전한 유사계층끼리의 결혼의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선물이나 증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V. 實證分析의 結果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행해진 연구결과는 커녕 수집해 놓은 자료 자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있는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와 우리 경우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가능한 결과 즉 외국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실증분석을 대신하려 한다.

외국의 경우도 정보수집의 어려움과 사회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미약한 관심때문에 소득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실증분석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몇 개의 유익한 연구결과를 인용할 수 있는데, 이들을 부자간의 근로소득 또는 소득과의 관계와 부자간의 부(재산)의 관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V. 1. 父子間の 勤勞所得 또는 所得의 關係

이에 관한 많은 연구 중 미국의 경우 세 개, 영국,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우 각각 하나씩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 아버지의 근로소득 (또는 소득)이 10% 상승했을 때 아들의 그것은 2% 미만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미국 Behrman & Taubman 1976, 1985).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영국 York 지방의 경우로써 아들의 시간당 소득은 4.4% 상승하고 있다(Atkinson, 1981). 그러나 "t값"으로 표현한 신뢰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들의 그것의 변동을 설명해주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nt)인  $R^2$ 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① 자료 수집시 응답상의 오류와 ② 아버지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일시소득(transitory income) ③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회귀계수의 심각한 편의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조정을 거쳤지만, 근로소득과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추정계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 나타난 증거들은 아들에 의한 부존의 유전가능성( $h$ )과 자본계약으로 인한 자식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성향이 크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위의 결과로 부터 가장 관계가 큰 영국의 경우(0.44)와 같이, 만일 부자간의 생애소득간의 관계가 0.4보다 크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윗세대의 잇점이나 불리한 점은 단 3세대안에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모는 손자와 그 아랫세대의 근로소득에는 거의 효과가 없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가족의 평판이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아랫세대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려는 동기를 가지지 않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을 결정짓는 변수가 세대가 바뀔때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한 가정의 빈곤은 몇세대 안에 사라지게 된다.

### V. 2. 父子間の 富의 關係

부모의 부와 자식의 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소득에서의 관계보다 찾아보기 어렵다. Harbury & Hitchens(1979)와 Menchik(1979)은 부유층의 유언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조사하였고, Whal(1985)은 1860년과 1870년의 센서스의 결과로 부터 얻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Menchik은 부자간의 재산사이의 탄력성은 0.7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영국의 자료를 사용한 Harbury & Hitchens의 연구결과는 이 보다 낮은 0.5 내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당시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Whal의 경우)는 더욱 더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추정계수는 근로소득에서의 부자간의 관계보다 높게 나타나 부의 평준화현상은 그들 소득의 그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 자료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부와 근로소득증에서 어느 것이 빨리 평균으로 회귀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만일 부모가 자식의 근로소득의 평균화의 소비에 대한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재산을 물려준다면 부는 근로소득보다 느리게 평균으로 수렴할 것이다. 반면 Whal(1985)이 19세기의 영국에서 부모의 부와 출산율 사이에는 강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듯이, 부와 출산율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부도 빠른 속도로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다.

출산율의 하락, 소득상승 그리고 정부의 교육비 지출등의 영향으로 자식에 대한 투자의 자본제약은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1970년대 이전에는 저소득층의 가정에서는 가족전체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10대들 중 학업의 중도포기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진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없는데, 이것은 위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제약의 약화현상은 또한 교육수준의 격차 축소와 자식의 교육에 가족 배경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 VI. 要約 및 結論

이 연구는 부모로부터 자식 및 후손들에게 근로소득, 재산 그리고 소비의 이전에 관한 것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결정, 효용극대화를 위한 소비와 재산의 배분을 통하여 밝히려 하였다. 세대간 이동 또는 한 가정의 흥망성쇠의 정도는 다른 세대간의 투자와 소비기회에 관한 효용극대화 행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화적 요인 그리고 유전적 요인을 합쳐 간단히 부존이라고 일컬었는데, 이 부존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이전가능성의 정도에 의해 이전된다고 가정했다. 근로소득의 세대간 이동은 부존의 이전가능성에 의존한다. 또한 부모가 최저 수준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면, 근로소득의 세대간 이동성의 정도도 본질적으로 부존의 이전가능성과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인적자본이 적절한 담보물이 될수 없기 때문에 중하위층 가정에서는 자식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에서의 제약은 중하위층 가정의 경우 자식에 대한 투자가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세대간 이동은 부존의 이전가능성 뿐만 아니라 빈곤한 가정에서 자식에게 투자할 자금의 자체조달을 하려는 의지에 의존하게 된다.

근로소득의 세대간 이동성의 정도는 자식의 수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투자재원이 자체조달 되어야 할 때, 한 가정에서의 자식의 수의 증가는 매 자녀당 투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크기와 부모의 근로소득간의 부의 관계는 또한 근로소득의 세대간 이동성을 감소시킨다.

재산은 부존의 평균으로의 회귀와 이로 인한 자식의 근로소득의 평균회귀성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

자본시장 접근이 용이한 부모들은 자식의 소비에서 근로소득의 평준화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재산이나 부채를 자식에게 넘겨준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부모와 자식에 의한 소비는 상향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자식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균형한계수익율이 저소득층의 경우가 높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부유한 가정에서의 소비와 총자원은 출산율이 부모의 부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식구가 많은 가정은 매 자녀에게 남겨지는 부는 줄어들게 된다. 불완전한 유사계층간의 결혼 역시 소비와 부를 평준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증분석에서 부모와 자식의 근로소득, 소득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몇 개의 연구를 살펴 보았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의 근로소득의 평균으로의 회귀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의 평균으로의 회귀속도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 특히 윗세대의 근로소득에서의 대부분의 有不利는 3세대 안에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빈곤은 수세대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즉 음지가 양지된다는 우리의 속담을 떠 울리게 한다.

근로소득에서의 평균으로의 빠른 회귀는 부존의 유전가능성과 자식에 대한 투자자원의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다. 아마도 이들 제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의 하락과 소득과 교육에의 보조금의 증가에 의하여 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함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은 가난한 가정보다 부유한 가정의 경우가 보다 빠른 속도로 평균으로 회귀한다. 더구나 자식의 부존과 부모의 근로소득과는 정의 관계가 있다하더라도, 부유한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으로의 인적자본투자의 재분배는 투자의 전체의 효율성을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 이유는 가난한 가정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금 조달에서 제약을 받고, 그 결과 투자의 한계수익율이 부유한 가정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소득과는 달리, 출산율과 부모의 부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소비는 가난한 가정의

경우가 보다 빠른 속도로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다. 사실 자식에게 유산이나 선물을 남길 여력이 있는 부유한 가정의 구성원들의 소비는 평균으로 회귀하지도 않을 것이다.

셋째, 그러나 출산율이 부모의 부와 정의 관계가 있다. 이 관계는 매 자식당 남겨지는 재산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매 자식당 소비와 부모의 소비간의 관계에서 소비 또한 평균으로 회귀하도록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의 근로소득의 관계, 보유재산 중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관한 조사자료가 전혀 없어서 위의 연구결과를 적용해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억지로 추정한다면, 어느 나라보다 “가문”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자식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최적수준에 매우 근접할 것이고 이 결과로 근로소득의 평준화 현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장자” 우선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현상은 더욱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이다.

## References

- Atkinson, A. B. "On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Britain."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3, no. 2 (1981) : 194-214.
- \_\_\_\_\_. *Social Justice and Public Policy*. Cambridge, Mass. : MIT Press, 1983.
- Becker, Gary S. *Human Capital*. 2d ed.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5.
- Becker, Gary S. and Tomes, Nigel.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no. 4, pt. 2 (1976) : S143-62.
- \_\_\_\_\_.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no. 6 (1979) : 1153-99.
- Behrman, Jere & Taubman, Paul.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come and Wealth." *American Economics Review* 66, no. 2 (1976) : 436-40.
- \_\_\_\_\_. "Intergenerational Earnings and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 Some Estimates and a Test of Becker's "Intergenerational Endowments Mode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 no. 1 (1985) : 144-51.
- Blake, Judith. "Family Size and the Quality of Children." *Demography* 18, no. 4 (1981) : 421-42.
- Blau, Peter M. & Duncan, Otis Dudley.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 Wiley, 1967.
- Bloom, Benjamin S.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 McGraw-Hill, 1976.
- Dewey, John. "Galton's Statistical Methods."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 no. 7 (1889) : 331-34.
- Harbury, C. D. and Hitchens, D. M. *Inheritance and Wealth Inequality in Britain*. London : Allen & Unwin, 1979.
- Kaldor, Nicholas. "Alternative Theories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3, no. 2 (1956) : 83-100.
- Mayer, Thomas. *Permanent Income, Wealth, and Consumption*.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Menchik, Paul L.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 An Empirical Study of Wealth Mobility." *Economica* 46, no. 184 (1979) : 349-62.

- Pasinetti, Luigi L. "Rate of Profit and Income Distribution in Relation to the Rate of Economic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29, no.4 (1962) : 267-79.
- Tomes, Nigel.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no.5 (1981) : 928-58.
- Whal, Jenny Bourne. *Fertility in America: Historical Patterns and Wealth Effects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